

자동화기기를 이용한 무통장/무카드 서비스 및 ATM통장출금 서비스 이용약관

제 1 조 (목적)

이 약관은 하나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무통장/무카드 서비스 및 ATM통장출금 서비스(이하 '서비스')의 제공자인 주식회사 하나은행(이하 '은행'이라 함)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(이하 '이용자'라 함)간에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서비스 이용매체)

하나은행이 설치·운영 중인 자동화기기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

제 3 조 (서비스 종류)

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- ① 무통장/무카드 서비스 : 하나은행의 자동화기기에서 통장 및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예금 출금 및 이체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
- ② ATM통장출금 서비스 : 하나은행의 자동화기기에서 통장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예금출금 및 이체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

제 4 조 (이용신청)

이용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고 은행이 이를 확인한 후 이에 대한 승낙 및 관련내용을 전산등록한 이후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

제 5 조 (이용자의 확인 및 비밀번호)

- ① 은행은 서비스 이용 시마다 다음에 열거된 사항이 사전에 은행에 등록된 자료와 일치할 경우 서비스 이용자를 신청인 본인으로 인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.

단, 이용자가 ATM통장출금 서비스 이용 시 ATM통장출금 비밀번호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은행은 신청서를 징구하고 별도 예외 등록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
가. 무통장/무카드 서비스 : 출금계좌번호, 계좌비밀번호, 무통장/무카드 비밀번호

나. ATM통장출금 서비스 : 출금계좌번호, 계좌비밀번호, ATM통장출금 비밀번호

- ② 이 서비스에 이용되는 비밀번호는 계좌비밀번호, 생일, 동일숫자, 연속숫자, 주민등록번호, 전화번호 등 추측이 용이한 숫자는 사용할 수 없다.
- ③ 비밀번호를 기억할 수 없을 경우 이의 조회 및 확인을 할 수 없고, 신규에 준하여 재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제 6 조 (출금계좌)

출금계좌의 지정은 서비스 신청 시 작성하여야 한다.

제 7 조 (이용시간)

서비스별 운영시간은 은행이 별도로 정한 시간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은행은 전산시스템 운영 사정에 따라 이를 변경 또는 제한할 수 있다.

제 8 조 (출금 및 이체)

- ① 출금계좌에서의 출금한도는 출금시점까지 현금화된 예금잔액(대출한도 포함)으로 하며, 해당 예금거래약관이나 약정서에 불구하고 카드/통장 없이 혹은 청구서나 수표 없이 통장만으로 출금할 수 있다.
- ② 출금 또는 이체를 완료한 거래는 정정 또는 취소할 수 없다.
- ③ 이용자는 수시로 잔액조회 및 통장정리를 통하여 거래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, 거래 내역이 필요할 경우에는 은행에 발급요청 할 수 있다.

제 9 조 (출금 및 이체한도)

자동화기기에 의한 1회 및 1일 출금한도(이체금액 포함)는 은행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지정할 수 있다.

제 10 조 (수수료)

- ① 출금 및 이체수수료는 은행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하며 변경이 있는 경우 은행은 영업점에 변경내용을 1개월간 게시하기로 한다.
- ② 수수료는 예금이나 약정서에 불구하고 예금통장, 예금청구서 또는 수표 없이 출금하기로 한다.

제 11 조 (서비스의 제한)

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은행은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.

- ① 서비스의 비밀번호가 연속하여 3회 이상 오류인 경우 (다만 3회 이전에 유효한 입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의 오입력은 없었던 것으로 한다)
- ② 서비스 신청 후 도중에 미이용기간이 1년을 초과했을 때
- ③ 1일 출금 및 이체한도를 초과했을 때
- ④ 지정계좌의 출금가능액이 출금 또는 이체금액과 이용수수료를 합한 금액보다 작을 때
- ⑤ 이체대상계좌가 사고신고, 해약, 거래중지, 잔액증명 발급 또는 법적 지급제한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
- ⑥ 1회 1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송금, 이체되어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금액 상당액 범위 내에서 30분간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 및 이체거래가 지연될 수 있다. 다만, 타점권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.
- ⑦ 자동화기기 최종거래일로부터 1년간 자동화기기를 통한 거래가 없는 계좌의 자동화기기 1일 인출 한도는 7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. 이 경우 고객은 영업점을 방문하여 인출한도를 상향할 수 있다.
- ⑧ 기타 법령사항의 사유로 인하거나 은행에서 정한 사유로 입출금이 제한될 때

제 12조 (서비스 이용의 변경, 해지)

이용자가 서비스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,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은행의 영업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은행이 변경, 해지처리를 함으로써 서비스 이용계약은 변경, 해지된다.

제 13 조 (제사고의 신고)

- ① 거래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영업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
- ② 서비스 신청내용의 변경은 본인이 은행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
- ③ 사고발생 시에는 즉시 은행에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

제 14 조 (손해배상 및 면책)

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손해배상 및 면책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- ①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
- ② 제3자가 권한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
- ③ 은행이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,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
- ④ 이용자가 제3항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·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
가. 누설·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
나.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

제 15 조 (합의관할)

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.

제 16 조 (준용규정)

-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, 금융결제원규약, 예금거래기본약관,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또는 은행에서 정한 업무처리방법을 적용한다.
- ②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준용한다.